



2026년도 (재)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277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11. 28. 
제출자 : 달성군수 

1. 제안 이유

- 2026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달성복지재단 출연 : 18억 1,020만 원
 - 달성복지재단 운영비 : 8억 1,020만 원
 - 재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5억9천500, 기본경비 2억1400, 사업비·예비비 120
 - 기본재산 적립금 : 10억 원
 -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성 확보
 - 산하시설 재위탁 및 신규시설 위탁시 기본재산에 따른 평가점수 확보

3. 출연심의 요구서 : 따로 붙임

4.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: 따로 붙임

5. 출연기관 현황 : 따로 붙임

출연 심의요구서

출연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명 :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○ 대표 : 송성열 ○ 소재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 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 예정 금액: 18억 1,020만 원(군비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 백만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사업기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2025년 예산액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2026년 요구액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3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81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재단 운영 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1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건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~12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27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95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본경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~12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14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비·예비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~12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본재산적립금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~12월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사업기간	2025년 예산액	2026년 요구액	비고	합계	-	734	1,810		재단 운영 비	소계	-	810		인건비	1~12월	527	595	기본경비	1~12월	205	214	사업비·예비비	1~12월	2	1		기본재산적립금	1~12월	0	1,000
구분	사업기간	2025년 예산액	2026년 요구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계	-	734	1,8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단 운영 비	소계	-	8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인건비	1~12월	527	59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본경비	1~12월	205	21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업비·예비비	1~12월	2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본재산적립금	1~12월	0	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○ 산하시설의 위탁개수 증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성 확보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거 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재정법 제18조 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○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, 제11조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부서 의견 (총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군민의 복지 수요 다양화에 부응하는 복지 프로그램 개발 노력 및 내실 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○ 복지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 안정성 확보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사업부서 검토의견서

1.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의견

- 2026년 출연금 18억 1,020만 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
 - 2026년도 인건비 기본 상승분 및 직무대리 직원 복귀로 인한 예산증액
 - 재단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적립금 편성

2.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2024년 결산액	2025년 예산액(최종) (A)	2026년 예산(안)			
			재 단 요구액(B)	부 서 검토액(C)	증 감 (C-B)	전년대비 증감액(C-A)
총 계	685	734	1,810	1,810	0	1,076
재단운영비	685	734	810	810	0	76
인건비	495	527	595	595	0	68
기본경비	145	205	214	214	0	9
사업비·예비비	45	2	1	1	0	△1
기본재산 적립금			1,000	1,000	0	1,000

출연기관 현황

기 관 명	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				전화번호	053-617-9200	
					홈페이지	www.dswelfare.kr	
설립근거	법률 : 민법,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					
주요연혁	설립연도 : 2008. 10. 15.						
임 원	직책	성명	주요경력			임기	
	대표이사 (비상임)	송성열	- 現 달성체육회 고문			2025. 1. 18.~2027. 1. 17.	
	상임이사	김외식	- 前 달성군 교육복지국장			2025. 1. 18.~2027. 1. 17.	
	비상임이사	구명숙	- 前 달성노인복지센터 대표			2025. 1. 18.~2027. 1. 17.	
	비상임이사	운영현	- 現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			2025. 1. 18.~2027. 1. 17.	
	비상임이사	임규태	- 前 달성군 공무원 (옥포면장)			2025. 1. 18.~2027. 1. 17.	
	비상임이사	전옥수	- 現 엠허브행복요양원 총무원장			2025. 1. 18.~2027. 1. 17.	
	비상임이사	정우선	- 前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관장			2025. 1. 18.~2027. 1. 17.	
	비상임이사	차한용	- 前 달성군 공무원 (현풍면장,환경과장)			2025. 1. 18.~2027. 1. 17.	
	비상임이사	김현태	- 前 달성군 공무원 (농업정책과장)			2025. 1. 18.~2027. 1. 17.	
	비상임이사	이용기	- 現 지원 대표			2025. 1. 18.~2027. 1. 17.	
	비상임감사	김대근	- 現 세무법인 양정 세무사			2025. 1. 18.~2027. 1. 17.	
	비상임감사	서연희	- 現 세무사			2025. 1. 18.~2027. 1. 17.	
	주요기능	○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-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-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-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 -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사업 - 복지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사업					
최근 3년간 예산현황	연 도	2023년	2024년	2025년	재무현황 (2024. 12. 31. 기준)	자산	2,100백만원
	예산액	1,639 백만원	1,544 백만원	1,709 백만원		부채	-
	지자체 지원액	640 백만원	685 백만원	734 백만원		자본	-

□ 「민법」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(이하 “공익법인“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학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 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달성군“이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제11조 (출연금 교부) 군수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